

#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

의안 번호	3348
----------	------

2025. 11. 24.  
주택공간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. 10. 18. 서울특별시시장 제출
- 회부일자: 2025. 10. 23.
- 상정 및 의결일자
  - 제333회 정례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(2025. 11. 24. 상정·의결)

## II. 제안설명 요지 (주택실장 최진석)

### 1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의거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비영리사업인 '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'를 운영하는 경우로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

- 소재지 : 구로구 개봉동 503 세이지움개봉주거안심지원센터 제2층 제217호
- 사용자 :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
- 사용허가 면적 : 토지 180.7544 $m^2$ , 건물 연면적 1030.41 $m^2$
- 사용허가 기간 : 2026.1.1. ~ 2030.12.31.(5년)
- 예상 감면액 : 209,524천원(월 3,492천원)

### 나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인 시민 주거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춰 흩어져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SH에서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주거안심종합센터 사업은 SH의 비영리사업으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면제가 타당함.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윤은정)

- 이 동의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(이하 'SH공사')가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내 기부채납 시설물을 5년간 '구로 주거안심종합센터'로 사용하면서, 그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감면(면제)받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('25.9.25.) 심의결과(조건부 적정)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음.

#### 2025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

- 본 건은 서울주택도시공사(SH)가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유재산(행정재산)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활용하고자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으로, '25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('25.9.25.) 심의결과 '조건부 적정' 의견을 득함.

#### <조건사항>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의거 출자·출연기관 등이 비영리사업을 할 때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므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기 바람

- 사용료 감면(면제) 대상은 약 180.8㎡의 토지와 연면적 약 1,030.4㎡의 건물로,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기준가격은 8억 3,744만원<sup>1)</sup>,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8억 3,875만원에 해당하는데, 법령과 조례에 의해 산출한 사용료 감면액은 5년간 총 2억 952만 4천원(월 349만 2천원)<sup>2)</sup>임.

사업명	구분		내역			
	심의사항	대상	수량	면적(㎡)	기준가격(천원)	감면액 (천원/1차년도)
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 주택실 주택정책과	사용료 [신규]	토지	1	180.7544	837,435	20,936
		건물	1	1,030.41	838,753	20,969

1) ㎡당 개별공시지가 4,633천원× 면적 180.8㎡

2) 토지·건물 기준가격 × 요율(25/1000), 부가세 제외

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26조제4항제1호

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.

1. 공용·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

## 세 부 내 용

### ○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

- 목 적 및 용 도 :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
- 위 치 :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503 세이지움개봉주거안심지원센터 제2층 제217호
- 사 용 면 적 : <토지> 180.7544㎡ / <건물> 1,030.41㎡
- 당 사 자 : <허가부서> 주택실 주택정책과 <수허가자>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
- 허 가 기 간 : '26.1.1 ~ '30.12.31 [5년] ※ 최초 허가일자 : '26.1.1.
- 무상사용기간 : '26.1.1 ~ '30.12.31 [5년]
- 기 준 가 격 : <토지> 837,435천원 [㎡당 개별공시지가 4,633천원 × 면적 180.7544㎡]  
<건물> 838,753천원 [시가표준액]
- 감 면 액 : 41,905천원/1차년도 [토지·건물 기준가격 × 요율(25/1000)] [부가세 제외]
- 감 면 근 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
  -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   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제3호
    - 제17조(사용료 감면)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   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

○ 주거안심종합센터는 SH공사에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대행업무<sup>3)</sup>4)를 통해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, 과거 여러기관에서 개별제공되던 주거복지센터 및 청년주거상담센터, SH지역센터 기능을 해당 자치구 주민들에게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는데,<sup>5)</sup> 이러한 사업취지(비영리사업)와 운영주체(지방공사)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

3)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22조(대행사업) ① 공사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.

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7조에 따르고,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위탁받은 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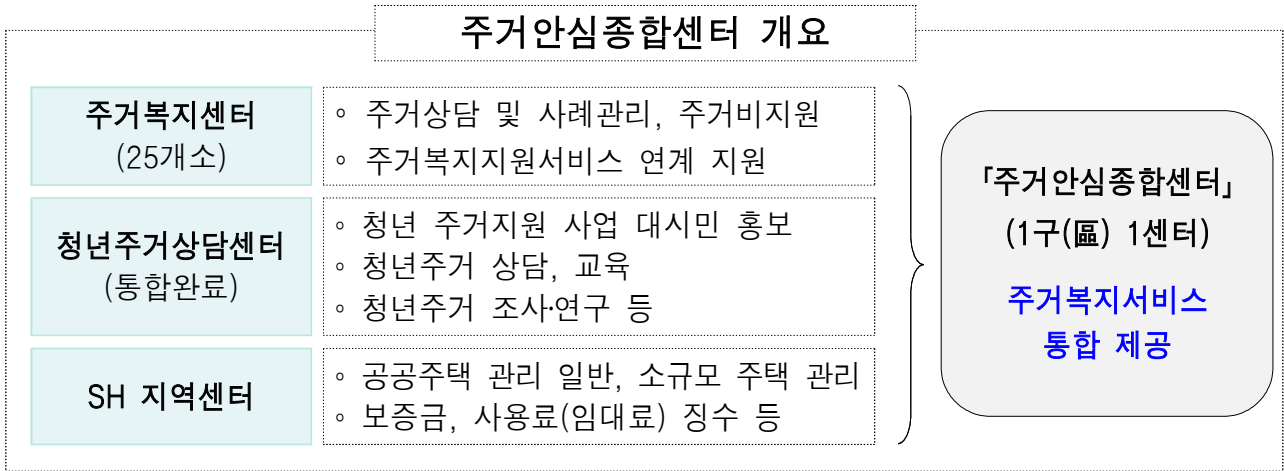
「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」

제21조(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·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4) SH공사 대행업무 비용은 2024년도 6,620백만원(사무관리비 22백만원(대행사업 회계감사) 포함), 2025년 6,607백만원(사무관리비 22백만원(대행사업 회계감사) 포함)임

5) 이중 SH공사가 직영하는 곳은 총 9개소(중·용산·성동·동대문·중랑·도봉·양천·서초·강동)이고, 제3자 위탁을 통해 운영 중인 곳은 총 16개소임.

용료 감면의 적정성과 필요성이 인정됨.



- 참고로 사용허가 기간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제1항에서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, ‘구로 주거안심종합센터’의 사용료 감면(면제) 허가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음.
- 다만, 장소 사용료의 감면기간과는 달리 서울시와의 대행업무 계약기간(`24.4.1.~`26.3.31.)이 2026년 3월 31일까지라는 점에서, 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(면제) 동의안은 SH공사에서 주거안심종합센터 대행업무를 계속 유지할 것을 전제로 상정된 것으로 이해되는바, 향후 사용료 감면(면제) 기간과 대행업무 계약기간을 맞추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.

<제3자 위탁 운영 중인 주거안심종합센터>

연번	지역명	법인명	연번	지역명	법인명
1	강남	(사)해남복지회	9	동작	(사)주거복지연대
2	강북	(사)강북주거복지센터	10	마포	(사)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
3	강서	(사)함께하는나눔과이음	11	서대문	(사)마을과사람
4	관악	(사)관악주민연대	12	성북	(사)나눔과미래
5	광진	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	13	송파	(사)위례
6	구로	(사)나눔은희망과행복	14	영등포	(사)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
7	금천	(사)한국주거복지협회	15	은평	(사)마을과사람
8	노원	(사)나는청소년	16	종로	(사)나눔과미래

자료 : 주택실 주택정책과 내부자료

- 또한,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(면제)을 받고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이번 제333회 정례회에 제출된 2곳(구로, 중랑)과 용산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총 3곳으로, 향후 SH공사가 제3자 위탁을 통해 운영 중인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포함한 그 밖의 센터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안 번호	334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10월 18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의거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비영리사업인 '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'를 운영하는 경우로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

- 소재지 : 구로구 개봉동 503 세이지움개봉주거안심지원센터 제2층 제217호
- 사용자 :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
- 사용허가 면적 : 토지 180.7544 $m^2$ , 건물 연면적 1030.41 $m^2$
- 사용허가 기간 : 2026.1.1. ~ 2030.12.31.(5년)
- 예상 감면액 : 209,524천원(월 3,492천원)

### 나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인 시민 주거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춰 흩어져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SH에서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- 주거안심종합센터 사업은 SH의 비영리 사업으로 서울시 주거 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면제가 타당함.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제1항 제4호
  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 - 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(사용료 감면) 제5항 제3호
  -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"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3.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2025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'25.9.25.)
  - 심의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6조제2항
  - 심의결과 : '조건부 적정'
  - 〈조건사항〉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 감면을 추진할 것

※ 작성자 : 주택실 주택정책과 남은주 (☎2133-7982)